

Efficient Disaster Response Using Reserve Forces

- Focusing on the US National Guard -

Sung Ho Choi^{*}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8644)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Abstract

The current society has experienced constantly small and large disasters including natural disasters (e.g. extreme weather) and industrial disasters due to industrial development. Moreover, the disasters are getting bigger and more serious and the social damage and recovery costs are increasing astronomically. Despite the increase of the occurrence and magnitude of various disasters, the ability of firefighting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o respond to disasters is still limited. Since the limited disaster response could cause enormous social damages, rapid and effective responses to cope with disaster and recover damages should be undertaken at the early stage of disaster cycle. However, mobilizing personnel to respond to disasters in a short period of time is a real challenge, and thus it would be an effective way to respond to a growing number of disasters using a reserve army which can be quickly mobilized.

Key words: disaster, recovery, reserve army

1. 서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지진 등의 자연현상과 산업재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2019).

재난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의되며 현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기존의 전쟁이나 무력분쟁,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같은 전통적 안보 상황에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포함하는 재난 상황, 국가 핵심기반마비 상황, 그리고 국민생활 위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포함한다(Lee, 2012: 75-77).

국가적 차원의 재난사례는 2007년 12월 충남 태안의 원유 유출사고를 들 수 있는데 이 재난사고로 태안 일대 해안 167km와 15개 해수욕장, 59개의 섬, 어장 등이 오염되어 약 5,735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8년 포항지진과 2019년 4월 발생한

^{*} Corresponding author: Sung Ho Choi, Tel. +82-43-259-3113, Fax. +82-43-259-3110, e-mail. kalisma-1024@hanmail.net

강원도 산불재난은 아직도 피해 복구 중에 있다.

이러한 재난상황은 발생 전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측이 어렵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인적, 재산적 피해 증가와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국가적 차원의 예방과 복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재난상황을 국가적 위기관리시스템 제도로 극복한 사례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재난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재난지원체계를 구축, 지원하고 있지만 인적동원이 필요한 재난 상황시 예비군을 동원하여 재해 및 재난을 방지하거나 복구하는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인원동원이 필요한 재난상황 시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 조직을 이용한다면, 국가적 재난상황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주 방위군의 재난지원체계와 한국의 재난동원에 대한 예비군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재난동원 시 예비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1) 재난의 개념

재난(Disaster)이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

연재해로, 최근에는 인위적인 사고도 재난의 개념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근대에서 현대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개념이다.

재난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국가적 상황, 학자들에 의해 각기 다르게 정의되는데 그것은 그 사회가 처한 사회적 환경이나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난에 대한 용어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등과 같이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재해”라고 사용하며, 재난관리법에서는 물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화재, 폭발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난”이라고 사용한다.

이렇듯 재난에 대한 용어는 ‘재해’와 ‘재난’이 같이 혼용되지만 재해는 재난의 원인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되며, 재난에 대한 분류는 <Figure 1>처럼 자연재난, 인위적 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오늘날 국가안보 개념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환경은 탈냉전 이후 군사적 위협은 줄어들었지만 환경적 위협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증가와 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도시화로 인한 인위적 재난 증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 사회는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오염, 지진 및 쓰나미, 테러, 마약, 불법이민 등과 같은 국제적 위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Go & Yang, 2012: 162).

Disaster				
Natural disaster			Semi-natural disaster	Man-made disaster
A physical disaster			Biological disaster	
Geological disaster	Topographical disaster	Meteorological disaster	Bacterial disease, poisonous animals, poisonous plants	Explosive, pollution, photochemical haze, riots, traffic accidents, war etc
Earthquake, tsunami, volcano, etc	Landslides, brine soils, etc.	Storm, typhoon, drought, abnormal temperature, fog, snow, tsunami, lightning, tornado etc.		

※ Source: Jones, D. K. C. 1991. Environmental hazards. 35.

Figure 1. Disaster classification

이와 같은 재난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위기관리의 개념도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안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Kim, 2007: 118).

이제는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야가 전통적인 군사·외교적인 안보뿐 아니라, 자연적 재난과 인적재난을 포함한 재난위기, 국가적 핵심 기능과 운영기반체계 분야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신종 위기 등을 포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Lee, 2006: 20).

우리정부도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국가적 규모의 재난이 발생 시 군의 지원을 기본법에 명시하였다(Go & Yang, 2012: 162). 또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군의 재난관리 및 지원임무를 포함하여 법제화 하였다(Defense Disaster Management Order, 2018).

최근의 재난상황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지구 온난화 등으로 가뭄과 홍수, 고온, 한파 등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 아이티 강진으로 22만 2,500명 이상 사망, 2010년 러시아 폭염으로 5만 5,736명 사망, 2010년 중국 칭하이성의 강진을 비롯해 원난성 가뭄, 간쑤성 산사태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4억 3천만 명의 이재민과 90조 4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Go & Yang, 2012: 162), 최근 2011년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26,680여명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

그리고 동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이라는 산업적·인위적 재난을 발생하게 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의 재난은 수소폭발과 방사능 물질이 묻은 수증기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2만여 명의 희생자와 17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고 방사능 오염 정화에 40여년이 걸린다는 최악의 산업재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렇듯 오늘날 기상이변에 의해 자연재난이나 산업재난이 발생한다면, 고도로 발달한 산업 및 도시화

의 시스템 속에 내재된 인위적인 위험요소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Go & Yang, 2012: 162-179).

동일본 사례처럼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전할수록 자연적·인위적 재난상황은 점점 증가할 것이며 피해 규모도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소방방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될 것이며 재난상황 발생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조직화된 대규모의 조직인 예비군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과 미국의 군 재난지원체계 비교

1) 미국 국방부의 재난지원체계

(1) 재난지원체계

미국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민간정부의 대처능력이 한계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국방부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며, 재난지원 범위는 자연 및 인위재난 발생 시 수송 및 의료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Go & Yang, 2012: 167).

국방부 자원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조정을 통해 지원에 대한 최종결론을 대통령이 내린다(Kim, 2011: 39-40).

미군의 민간지원에 관한 근거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미 헌법 제8절 제1조에서는 “군은 국가를 방위하고, 국내적 응급상황과 재난발생시 대응하는 의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Go & Yang, 2013: 167).

(2) 재난단계별 대응방법

재난이 발생한 이후 미국의 재난관리는 <Figure 2>와 같이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진다(Go & Yang, 2012: 166).

재난발생 시 미국의 지방정부는 시·군을 중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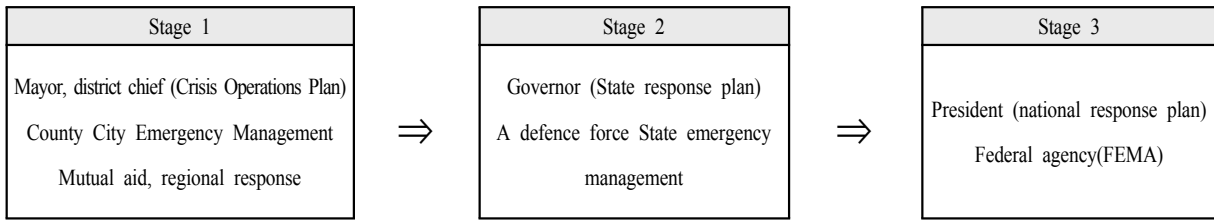


Figure 2. Disaster response in the US

로 재난과 응급상황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Park, et. al., 2006: 6-7)

그리고 지방정부의 대처능력을 벗어나게 되면,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인접 지방 혹은 주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Go & Yang, 2012: 166). 하지만 주정부의 지원 역량이 충분치 못할 경우, 주정부는 인접 주정부와 체결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게 되며, 그렇게 해도 재난대처 능력이 충분치 않을 때는 연방차원의 지원과 연방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다(Park, et. al., 2006: 6-7).

재난이나 응급상황이 발생 시 주지사는 지방정부의 지원요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응급상황을 선포할 수 있으며, 재난대응을 위해 주정부의 대응 계획을 실행하고, 주정부 관할 내에 있는 주 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다(Kwon, 2009: 38).

재난상황 시 연방정부는 연방위기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을 중심으로 재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국가대응계획(National Response Plan)을 수립하여 원활한 응급지원기능 임무를 수행하도록 주무기관 및 지원기관으로 구분 지정한다(Kwon, 2009: 40).

그리고 주정부는 주 방위군의 인력과 장비가 재난 상황에 투입할 준비가 되면 주정부와 연방정부차원에서 투입을 판단하여 현장에 제공된다.

(3) 재난지원 절차

민간정부에 대한 군의 지원(MACA)활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 정부의 재난대처능력이 초과하는 상황에서만 지원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Jung, 2011).

재난지원에 있어서 국방부는 대통령이 “특별 재난 혹은 응급사태”를 선포한 이후, 주 정부 혹은 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구에 대해 재난지원을 하며, 일반적으로는 다른 연방기관을 지원한다(Jung, 2011).

미 국방부의 지원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정부기관과 민간에 대한 군의 원조(MSCA) 형태로 나타나며,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없는 한 본래의 군 임무가 우선하고, 민간에 대한 군의 재난지원이 결정되면 매뉴얼에 의해 단일 지휘관을 임명하고 기지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재난지원을 하며, 민간정부가 필요한 안전과 안보를 확보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제공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Park, et. al., 2006: 1-13).

민간정부에 대한 군의 지원(Military Assistance to Civil Authorities)은 군의 원조(Military Support to Civil Authorities)와 군의 지원(Military Assistance for Civil Disturbance)을 포함하는 것이다(Go & Yang, 2012: 166).

MACA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조직이지만 미국 내 자연 및 인위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과 활동이며, 민간정부의 지원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부의 지원이다. 또한 MACA는 인명구조와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민간정부를 지원하며, 국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Go & Yang, 2012: 166).

재난에 대한 지원활동은 “특별재난 혹은 응급사태”를 대통령이 선포한 이후 이루어지며, 주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민간기구에 대해 지원을 한다.

MACA가 민간에 대해 지원 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우선순위에 의거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재원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결정되면 합동참모부에서는 지정한 지원전투사령관이 다음의 원칙에 따라

지원을 실시한다(Go & Yang, 2012: 166).

첫째, 재난물자 지원 시 민간 정부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둘째 군 지원은 민간 정부기관이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셋째 재난 지원 시 국방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며,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군이 민간정부의 기능을 수행해선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임시적으로 운용한다. 넷째 군의 지원은 민간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안전과 안보를 확보할 때까지만 제공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재난사건에 30일을 넘지 않는다(Kwon, 2009: 48).

재난 선포 전 피해복구가 지방정부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연방정부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 군 지휘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지휘관은 민간정부의 요청에 응할 수 있으며, 지원 실시 후에는 즉각적으로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미국 재난지원체계가 주는 시사점

미국은 국가 면적이나 국력, 문화와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우리와는 매우 다르고, 재난지원에 대한 개념도 다르지만 재난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우리 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첫째,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중요한 임무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지방정부가 1차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정부의 대처능력을 초과할 경우, 주정부에 재난지원을 요청한다. 재난지원 요청을 받은 주정부는 주 방위군을 포함한 가용자원으로 대처하고, 주정부의 능력을 초과할 때에는 연방정부에 재난지원을 요청하여 대처한다.

둘째, 재난지원 시 미군(연방군, 주방위군)은 민간정부의 대처능력을 초과하여 지원요청시에만 지원을 하며 지원부대가 안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군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군에서 민간정부에 대해 재난지원을 결정하면 지원전투사령부를 지정하고, 단일 지휘관을 임명하며 지원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같은 대응방안은 재난발생시 군의 지원원칙과 지원부대에 대한 기준,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사령부 설치, 지휘체계를 일원화, 능력 부족 시 재난지원부대의 추가 지정 등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

2) 한국의 군 재난지원체계

(1) 재난지원체계 및 절차

한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동원명령)에 의해 소방방재청 중앙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국방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제44조(응원)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시 다른 시·군·구나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지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지원을 해야 하며, 지원을 요청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Framework Act, 2019: 16666).

국방부는 재난관리를 위해 훈령 제6조(재난대책본부 등)에 “재난관리와 대민피해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와 각 군 및 직할기관에 재난대책본부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2조와 (대민지원 기본지침)와 제23조에서는, 군의 지원에 대해 “정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력과 장비 등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군부대의 장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한다.”고 대민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조(목적)에서는 군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재난피해복구 대민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훈령 제5조(재난관리 집행계획의 수립)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부는 재난관리 계획을 작성하고 각 군은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 재난관리훈령 제6조(재난대책본부 등)는 군

재난관리와 대민피해복구 지원 등 군이 재난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및 직할기관에 재난대책본부를 두며, 육군은 독립연대급 이상의 제대, 해군은 전단(대)급 이상 부대, 공군은 독립전대급 이상의 부대, 직할부대는 독립적으로 배치된 부대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상시 부대에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상황전파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재난발생시 예비군 동원

2019년 국방부훈령 제81조에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재난동원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훈령 제82조에서는 재난발생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는 재난동원의 발령권자를 “국방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예하 군부대의 장(수입군부대장급 이상)이며 위임 및 위탁 사항에 대해 국방부장관이나 군 부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훈령 제82조에서는 재난동원의 시기에 대해 “재난 발생이나 발생우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군 부대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훈령 제83조는 재난동원대상자를 “지역예비군 동원 대상자 중 수입군부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지역방위작전을 위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해 소집된 예비군 중 재난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훈령 제82조 2항에서는 재난동원된 예비군의 운용에 대해 “재난발생지역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며, 재난동원된 지역에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타 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된 국방부 훈령 제82조(개념)과 제83조(재난동원 대상자 및 운영)는 미국 국방부의 재난지원 체계와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재난이 발생하여

민간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군이 재난지원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도 예비군에 해당하는 주 방위군을 동원하여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상황은 유사하지만, 주 방위군의 재난지원은 응급구조와 치안유지 보조 등의 임무와, 사회/문화적 환경, 재난동원 시 발령권자, 지휘체계, 동원의 법률적 근거 차이 등 한국의 예비군 동원과는 많은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3) 재난발생시 예비군 지원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계절의 구분 없이 다양한 자연적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2014년 강원 영동지역 폭설로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의 통행 제한과, 2017~2018년 경북 포항지진, 2019년 4월 강원도(고성, 속초, 강릉·동해, 인제)지역의 산불피해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상황 시 재난복구를 위해 복구 활동을 위해 재난현장을 지원하는 인원은 현역부대 위주이며 예비군을 동원하여 복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 예비군을 재난상황에 동원한 사례는 2007년 제주도의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동원령이 발령되어 지역예비군 628명을 동원하여 재해복구를 실시한 사례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재난상황에 예비군 동원이 없었던 이유는 2007년까지 예비군의 재난 동원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없었기 때문이며, 2012년 이후부터는 예비군 업무 지침서인 실무편람에 예비군 동원사항을 포함한 재난 동원의 목적과 개념, 재난동원 대상자 및 운영, 재난동원 시 하령 및 전파체계, 재난동원 시 응소, 근무지원과 사후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난발생 지역에 대한 군부대의 복구활동은 현역부대의 인원과 장비 위주로 지원하는 대민지원의 개념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재난에 대처하는 사고를 전환하여 지원위주의 소극적 대처방법에서 적극적·능동적 대처방안으로 전환해

야 한다.

한국의 재난상황도 과거와 다르게 집중호우, 폭설, 지진, 산업재난 등 매우 급격한 기후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난안전지역에서 재난발생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재난발생 시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며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 등의 한정된 복구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성을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상황을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는, 소방방재청, 공무원, 군부대 정도이나 후방지역인 2작전사 예하 시·군·구를 담당하는 대대급 부대의 인원은 60~70명 정도로 매우 적기 때문에 포항지진이나 강원도 산불처럼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많은 인원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사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병력지원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처럼 재해·재난이 발생하여 복구가 필요한 경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군부대 위주의 대민지원 개념이 아닌, 예비군을 동원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적극적 방안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비군 재난동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난동원 지침을 더욱 구체화하여 재난동원 대상자 범위와 재난 동원에 투입된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항, 보상 및 사후처리 방안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화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III. 조사 및 분석

1. 연구분석의 틀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재난상황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비군은 후방지역의 전쟁억제라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임무를 좀 더 확대해석하면 자연재난과 같이 생각지도 못한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규모의 재난상황 시 소방방재청만으로는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재난복구의 전략 예비자원으로써 예비군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주 방위군의 재난지원체계가 주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국에서 재난동원 시

Table 1. Variable and measuring method

Territory	Variable	How to measure	Remarks
Reserve forces activity area	Awareness of disaster	Disaster experience	
		Willingness to attend disaster education	
		Disaster recovery participation experience	
		Participation in disaster recovery	
	Reserve force participation in disaster activity	Differences in crisis	
		Participation in recovery activities during a crisis	
		Recruiting reserve troops in case of disaster	
Social recognition of disaster recovery activities	Appreciation for reserve forces involved in disaster activity		
	Recognizing disaster recovery tasks		
	Necessity of reserve forces in disaster recovery activities		
Personal characteristic factors	Gender	Male, female	
	Military service	Reserve station, Public service station	
	Age	Age	
	Work type	Civil servant / public institution, office worker, self-employed employment preparation and university	
	Education level	High school and below,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예비군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난동원에 대한 예비군들의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요도와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미국 주 방위군 재난지원체제와 비교를 통해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재난동원 시 재난복구에 참여하는 예비군의 재난상황에 대한 인식, 재난활동 참여, 재난복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124명을 대상으로 2019년 6월5일~8월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상황 시 복구활동에 참여하게 될 예비군을 대상으로 IBM SPSS 19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개인적 특성요인 중 교육수준과 근무형태에 따라 예비군의 재난활동 참여, 재난복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차이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선형모델분석을 적용하였다.

1) 예비군의 재난에 대한 인식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군들의 재난인식정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인원 중 재난경험이 있는 인원 16명(12.9%)보다 재난경험이 없는 인원 108명(87.1%)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재난상황과 재난에 대처하는 교육에 대해 참석의사가 있는 인원 96명(77.4%), 참석의사가 없는 인원은

28명(22.6%)으로 재난관련 교육에 대해 많은 인원들은 교육참여 의사를 표현하였다.

재난복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원은 44명(35.5%)이 군 복무시절 복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80명(64.5%)은 재난복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복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질문에 92명(74.2%)이 참여의사를 표현했고, 32명(25.8%)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예비군 124명 중 대부분은 재난을 경험하거나 재난복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었으나, 재난에 대비한 교육 참석활동이나 재난발생시 복구활동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2) 예비군의 재난활동 참여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군의 재난활동 참여 중 재난위기에 대한 의미의 차이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알지 못하는 인원은 4명(3.2%)이며, 마스크 등을 통해 보통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원 44명(35.5%),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원 52명(41.9%), 잘 알고 있는 인원 24명(19.4%)으로 재난위기의 차이점에 대해 보통수준 이상으로 알고 있는 인원 120명(96.8%)으로 나타났다.

재난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복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질문에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인원 4명(3.2%), 참여하지 않겠다는 인원 8명(6.5%), 보통수준으로 참여하겠다는 인원 40명(32.3%), 대체적으로 참

Table 2. Recognition of disasters in reserve forces

Division		Cases	Ratio(%)
Survey subject		124	100
Recognition of disasters in reserve forces	Disaster experience	Yes	16
		No	108
	Willingness to attend disaster education	Yes	96
		No	28
	Disaster recovery participation experience	Yes	44
		No	80
	Participation in disaster recovery	Yes	92
		No	32

Table 3. Reservist participation in disaster activity

Division		Cases	Ratio(%)	
Survey subject		124	100	
Reservist participation in disaster activity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crisis and crisis	I don't know at all	0	0
		do not know well	4	3.2
		Is average	44	35.5
		Generally know	52	41.9
		I know very well	24	19.4
	Participation in recovery activities during a crisis	I don't know at all	4	3.2
		do not know well	8	6.5
		Is average	40	32.3
		Generally know	48	38.7
		I know very well	24	19.4
	Recruiting reserve troops in case of disaster	I don't know at all	12	9.7
		do not know well	28	22.6
		Is average	28	22.6
		Generally know	28	22.6
		I know very well	28	22.6

여하겠다는 인원 48명(38.7%),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인원 24명(19.4%)으로 재난상황시 복구활동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인원이 72명(58.1%)으로 나타났다.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인원 12명(9.7%), 참여하지 않겠다는 인원 28명(22.6%), 보통수준으로 참여하겠다는 인원 28명(22.6%), 대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인원 28명(22.6%),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인원 28명(22.6%)으로 예비군을 동원하여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인원 40명(30.3%)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인원 56명(45.2%)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예비군의 재난복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군의 재난복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중 예비군에 대한 고마움인식에 대해 전혀 고마움을 갖지 않는다는 인원은 28명(22.6%)이며,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20명(16.1%), 보통수준으로 느낀다는 있는 인원 52명(41.9%), 대체

로 고마움을 느낀다는 인원 20명(16.1%), 매우 고마움을 갖는다는 인원 4명(3.2%)으로 예비군의 재난복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중 예비군에 대한 고마움을 갖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 48명(38.7%)이 긍정적인 인식 24명(1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복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중 예비군 임무에 대한 인정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원 8명(6.5%),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원 28명(22.6%), 보통수준으로 인정한다는 인원 48명(38.7%),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는 인원 36명(29.0%), 매우 인정한다는 인원 4명(3.2%)으로 예비군의 임무 인정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원 36명(29.1%)보다 긍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인원이 40명(32.2%)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난복구 활동 시 예비군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는 인원은 없었으며, 필요하지 않는다는 인원 8명(6.5%), 보통이다 는 인원 48명(38.7%),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원 36명(29.0%), 매우 필요하다는 인원 32명(25.8%)으로 재난복구 활동 시 예비군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이 68명(54.8%)으로 나타났다.

Table 4. Social recognition of reserve force disaster recovery activities

Division		Cases	Ratio(%)	
Survey subject		124	100	
Social recognition of reserve force disaster recovery activities	Thanks for the reserve force	Thank you not at all	28	22.6
		Don't appreciate	20	16.1
		Is average	52	41.9
		Thank you for the most part	20	16.1
		Thank you very much	4	3.2
	Recognition of mission	I do not admit at all	8	6.5
		Do not admit	28	22.6
		Is average	48	38.7
		We admit generally	36	29.0
		I admit it very much	4	3.2
	Need for Reserve force	Not needed at all	0	0
		It is not necessary	8	6.5
		Is average	48	38.7
		Generally needed	36	29.0
		Very necessary	32	25.8

4) 교육수준과 근무형태에 따른 예비군의 재난활동 참여와 사회적 인정

예비군의 교육수준과 근무형태에 따른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예비군의 교육수준에 따라 재난위기의 차이점 이해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7.6, ***P<.001),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과 근무형태에 따른 상호작용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군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난위기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수준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재난위기 시 복구활동 참여는 예비군의 교육수준에 따라 복구활동 참여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8.1, ***P<.001), 근무형태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9.7, ***P<.001). 또한 교육수준과 근무형태에 따라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F=29.0, ***P<.001). 즉 예비군의 교육수준과 근무형태에 따라 재난위기 시 복구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재난상황 시 예비군 동원은 예비군의 교육수준에 따라 예비군 동원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F=9.51, ***P<.001),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F=5.7, ***P<.001). 또한 교육수준과 근무형태에 따른 상호작용도 유의미하게 나타났(F=6.11, ***P<.001).

재난복구활동에 참여한 예비군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본 결과 예비군의 교육수준에 따라 사회적 인정 가치인 예비군에 대한 고마움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14.3, ***P<.001),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F=11.3, ***P<.001). 하지만 교육수준과 근무형태에 따른 상호 연관성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복구활동 임무에 대한 인정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예비군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21.8, ***P<.001), 근무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7.5, ***P<.001). 하지만 교육수준과 근무형태에 따른 상호작용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복구활동 시 예비군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예비군의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9, *P<.05), 근무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8, *P<.05). 또한 교육수준

Table 5. Variance analysis of reservist forces' participation in disaster activity and social recognition by educational level and work type

Division		Sum of squares	Degrees of freedom	Mean square	F	Significance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disaster crisis	Education level	11.8	3	3.93	7.6	.000***
	Work type	2.4	3	.809	1.6	.205
	Education level × Work type	.521	3	.174	.333	.801
	error	59.4	114	.521		
	Sum	1844.0	124			
Participation in recovery activities during a disaster crisis	Education level	33.3	3	11.1	28.1	.000***
	Work type	23.4	3	7.8	19.7	.000***
	Education level × Work type	34.3	3	11.4	29.0	.000***
	error	45.0	114	.395		
	Sum	1764.0	124			
Recruiting reserve troops in case of disaster	Education level	33.0	3	11.0	9.5	.000***
	Work type	19.9	3	6.6	5.7	.001***
	Education level × Work type	21.1	3	7.0	6.11	.001***
	error	131.4	114	1.2		
	Sum	1524.0	124			
Disaster recovery activities thank you for participating reserve forces	Education level	31.9	3	10.6	14.3	.000***
	Work type	25.3	3	8.4	11.3	.000***
	Education level × Work type	1.96	3	.655	.880	.454
	error	84.8	114	.744		
	Sum	996.0	124			
Recognition of disaster recovery tasks	Education level	33.3	3	11.1	21.8	.000***
	Work type	26.8	3	8.9	17.5	.000***
	Education level × Work type	1.46	3	.488	.956	.416
	error	58.13	114	.510		
	Sum	1228.0	124			
During disaster recovery activities need for reserve force	Education level	8.28	3	2.76	3.9	.011*
	Work type	8.20	3	2.74	3.8	.012*
	Education level × Work type	3.56	3	1.19	1.66	.018*
	error	81.68	114	.72		
	Sum	1840.0	124			

*P<.05, **P<.01, ***P<.001

과 근무형태에 따른 상호작용적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1.66, *P<.05).

3. 비교분석에 따른 방안제시

한국과 미국의 군 재난지원은 공통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재난이 발생하여 민간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군이 재난지원에 투입한다는 개념적 사항은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주방위군 재난지원 체계를 분석하고 한국 예비군의 재난동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예비군을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재난 발생 시 한국과 미국 모두 소방조직을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재난에 대처하지만, 허리케인 등 대규모의 자연재난 발생 시 미국은 주 방위군을 재난대응 가용자원으로서 활용한다.

한국도 재난상황 시 군 조직을 재난복구 활동에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2작전사 예하 후방지역의 시·군·구에 위치한 군부대 인원은 60~70명 정도로 매우 적기 때문에 지원의 한계성이 나타나며, 재해·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처와 복구가 필요시 미국의 주 방위군처럼 재난대응 가원자원으로 예비군을 동원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적극적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주 방위군은 직업적인 성격의 보수와 학비지원, 개인 경력축적, 사회적 인정 등 많은 장점이 있어 재난동원 시 사명감을 갖고 투입하지만, 한국에서의 예비군은 군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재난동원 시 다른 보상체계 없이 훈련참석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재난동원 참여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이나 임무수행에 대한 자긍심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미 주방위군(National Guard)과 같은 사회적 인정이나 보상체계 사항을 검토하여, 재난동원에 소집된인원들에게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며, 지역의 어려움 극복에 참여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예비군으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상제도가 필요하다.

IV. 결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의 급격한 확산과 과학·산업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대형화·밀집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해 재난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재난상황은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위협은 줄어든 반면에, 새로운 위협 요소인 재해·재난 등이 급부상하고 있어, 국가 위기관리에 포괄적 안보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오늘날은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 등과 함께 지진과 쓰나미, 폭우, 폭설 등의 자연재난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피해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상황극복을 위해 주 방위군을 동원하여 대처하는 미국의 경우는 눈여겨 볼만한 사례이다. 미국은 재난발생 시 우리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상황을 주 방위군을 포함한 모든 가용자원을 포함하여 극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 능력을 초과할 때에는 인접한 주 또는 자치단체가 지원토록 되어 있고, 주(State)의 극복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대통령이 “특별 재난 혹은 응급사태” 선포를 통하여 연방정부가 지원토록 되어있다.

그리고 군은 민간기구의 능력이 초과된 상황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루어지며 민간에 대한 군의 지원활동(MACA)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미군의 재난지원체계가 시사하는 바를 기초로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예비군의 역할과 대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현재의 군 지원체계를 현역부대 위주의 지원개념에서 예비군을 재난 동원하여 재난상황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7~18년 포항지역 지진재난, 2019년 강원도 산불재난 등과 같이 재난상황은 어느 한정된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따라서 재난현장에 조직화되고 숙련된 예비군을 초기에 투입하여 복구활동에 참여 한다면, 재난복구 측면이나 피해예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지휘체계의 정립이다.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는 일차적인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처 능력을 벗어날 경우 정부가 지원한다.

재난상황 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대처활동을 하게 되면 군 지원체계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임군부대장이 주로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육군 소속의 직할부대나 공군부대 등 다양한 부대가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예비군까지 재난 동원되어 복구활동에 참여한다면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재난대처의 주도적인 역할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예비군을 포함한 모든 군사지원 활동은 단일 지휘체계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임군부대에서 일원화하여 재난복구에 참여하여야 한다.

셋째, 재난동원으로 소집되어 임무수행을 한 예비군에게는 연차별로 예비군 훈련시간을 참석 처리하여 당해 연도의 예비군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동원에 참여한 예비군을 단순히 군역으로만 처리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미국의 주방위군과 같은 경제적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비군 스스로가 지역사회 의 어려움 극복에 참여했다는 공감대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재난동원에 참여한 예비군에게는 재난복구활동 참여 배지를 제작하여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임군부대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하여 자긍심을 높이며, 정부차원에서 국·공립 공원 무료이용권이나, 영화관람 시 할인혜택 등 예비군 당사자들이 자긍심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비군들은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고마움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분석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예비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체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성 없이는 수많은 인원들이 재난복구를 위해서 투입하여도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평시 예비군 교육훈련 과목에 재난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 복구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동원이 되었을 때 재난복구활동의 역할과 임무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예비군을 활용한 재난동원 지침을 구체화하고 실제 재해·재난 발생 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대응기관과의 지원 및 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다. 국방부의 일방적인 지원지침으로는 현장에서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재난상황을 처리하는 집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토의를 거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무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사항에도 포함하여 예비군 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연구는 재난동원 시 예비군을 동원한 효율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예비군들이 재난동원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표본 집단이 청주시로 한정되어 전국적으로 다양화 할 필요성과, 심층적 면접을 통한 질적 접근방법의 보완, 그리고 예비군을 재난 동원한 구체적 사례가 없어 연구 분석 모델에 어려움이 있었다.

References

- Basic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2010. Law No. 16666. Partial Amendment Dec. 3, 2019.
- Defense Disaster Management Order. 199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o. 2189. Partial Amendments Aug. 10, 2018.
-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Safety Management. 2010. Presidential Decree No. 30050. Partial Amendment Aug. 27, 2019.
- Gangwon-do Disaster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2019. *Special Plan for Disaster Recovery in Wildfires in Gangwon-do.*

- Jang, Seok Hwa. 2002. A Study on Frontline Disaster Management Administration. Ph.D. Thesis. Dongguk University.
- Ji, Sung Bae. 2013. A Study on the Increase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by Threat Changes.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 Jung, Sang Bae. 2011. Analysis of the Disaster Assistance Status of Military Forces in Korea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Military.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 Kim, Jin Kwang. 2011.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Advancing Defense Disaster Manage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 Ko, Chang Suk and Gi Geun Yang. 2012. The Role of the Military in Disaster Management and It's Preparation Direction. *Crisisonomy*. 8(2): 162-179.
- Kwon, Young Joon. 2009. A Study on Improving the Military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Disasters.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 Lee, Chae Shin. 2007. A Study on Crisis Response Activities of Crisis Response Organizations. Doctoral Dissertation. Ulsan University.
- Lee, Jae Un. 2006. A Study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Legislation under the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Crisisonomy*. 2(2): 19-35.
- Lee, Jae Un. et. al. 2014. Korea's Complex Disaster Response and Crisis Management System. *Crisisonomy*. 10(9): 15-31.
- Lee, Mi Jeong. 2013. Modular Organization of Korean Civil Defense System. *Crisisonomy*. 2(1): 151-168.
- Lee, Seung Woo. 2007. A Study on the National Disaster and Disaster Management Support of the Korean Militar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 Order of Defense Mobilization Services. 2019. Ministry of Defense Order No. 2241. Revision 2018. 12. 28.
- Park, Duk Geun. et. al. 2006. The Role of the Military in Disaster Management Systems: Focusing on the US Case. *Crisisonomy*. 2(1): 1-13.
- Reserve Army Law. 1968. Law No. 16585. Partial Amendments November 26, 2019.
- Sun, Young Bae. 2018. A Stud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serve Force Emergency Response Units in the Event of a Disaster. *Korean Disaster Information Society*. 14(1): 9-16.
- Yang, Gi Geun. 2004. A Study on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al Learning System. Ph.D. Thesis. Kyung Hee University.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19. 강원도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복구계획.
- 고창석, 양기근. 2012.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과 대비방향. *한국위기관리논집*. 2(1): 162-179.
-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2019. 국방부 훈령 제2241호. 개정 2018. 12. 28.
- 국방재난관리훈령. 1991. 국방부훈령 제2189호. 일부개정 2018. 8. 10.
- 권영준. 2009. 국가재난에 대한 군 재난관리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 김진광. 2011. 국방 재난관리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박덕근 외. 2006. 재난관리 체계에서의 군의 역할: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2(1): 1-13.
- 선영배. 2018. 재난상황 시 예비군 긴급대응부대 창설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14(1): 9-16
- 양기근. 2004. 위기관리 조직학습 체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예비군법. 1968. 법률 제16585호. 일부개정 2019. 11. 26.
- 이미정. 2013. 한국 민방위체계의 모듈형 편제 시행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2(1): 151-168.
- 이승우. 2007. 한국군의 국가재해·재난관리 지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이재은 외. 2014. 한국의 복합재난 대응과 위기관리체제 발전방향. *한국위기관리논집*. 10(9): 15-31.
- 이재은. 2006.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2(2): 19-35.
- 이채신. 2007. 위기현장 대응조직의 위기대응 활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장석화. 2002. 일선 재난관리행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10. 대통령령 제30050호. 일부개정 2019. 8. 2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0. 법률 제16666호. 일부개정

2019. 12. 3.

정상배. 2011. *각국 군대의 재난지원 실태분석과 한국군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지성배. 2013. *위협의 변화에 따른 국가재난관리 증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Received: Dec. 5, 2019 / Revised: Jan. 9, 2020 / Accepted: Jan. 9, 2020

재난발생시 예비군을 동원한 효율적 대처방안

- 미국 주 방위군 재난지원체계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과 산업발달로 인한 산업재난 등 크고 작은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은 점점 대형화되어 이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복구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재난의 발생과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데 비해, 재난에 대응하는 소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은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재난대처의 한계성은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피해로 나타나며, 이러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발생 초기에 신속한 재난대응과 피해에 대한 복구 활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난 대응을 위해 짧은 시간에 인원을 동원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이에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조직을 활용한다면 증가하고 있는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재난, 복구, 예비군조직

Profiles **Sung Ho Choi** : H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1996 and a master's degree in administration in 2018. Since 2018, I have been studying doctorate in administration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are related to disasters and he is writing a doctoral thesis on how to use reserve forces to effectively deal with disasters (kalisma-1024@hanmail.net).